

18. 여 수신 금리결정 체계 및 금리현황

가. 여 수신 상품별 금리결정체계

여신금리

여신금리는 지점의 신대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신용등급, 시장가격추이 및 고객과의 협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수신금리

수신금리는 자금부가 조사한 주요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금리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대표가 승인합니다.

나. 여수신금리(상품별) 현황

(1) 여신금리

(2024년 12월 31일)

구분			신용등급별1) 현황		비고
			최상위 등급	최하위 등급	
개인대출	신용대출 (무보증, 1년)	등급	해 당 사 항 없 음		
		적용금리			
	아파트담보대출 (1년)	등급	정상	정상	
		적용금리	4.26%	4.79%	
	예금담보대출 (정기예금1년)	등급	해 당 사 항 없 음		
		적용금리			
기업대출	기업일반대출	등급	A+	A	
		적용금리	2.40%	6.33%	
	당좌대출	등급	해 당 사 항 없 음		
		적용금리			

주: 1) 정상등급을 대상으로 함
2) 무보증대출 기준

(2) 수신금리

(2024년 12월31일)

구분		기간	최저금리1)	최고금리2)	비고
원화보통예금		-	0.10%	0.10%	
외화보통예금(미달러)		-	0.02%	0.02%	
외화보통예금(중국위안화)		-	0.50%	0.50%	
외화보통예금(유로화)		-	0.00%	0.00%	
원화정기적금		1년	n/a	n/a	
외화정기적금(미달러화)		1년	n/a	n/a	
원화정기예금		1개월	1.00%	1.00%	
		3개월	1.20%	1.20%	
		6개월	1.30%	1.30%	
		1년	1.50%	1.50%	
		2년	1.60%	1.60%	
		3년	1.70%	1.70%	
외화정기예금	미달러화	1개월	0.02%	0.02%	
		3개월	0.15%	0.15%	
		6개월	0.35%	0.35%	
		1년	0.60%	0.60%	
	중국위안화	1개월	1.60%	1.60%	
		3개월	1.70%	1.70%	
		6개월	1.80%	1.80%	
		1년	2.00%	2.00%	
		2년	2.00%	2.00%	
근로자우대저축		3년	해 당 사 항 없 음		
		5년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해 당 사 항 없 음		

주: 1) 기본고시금리 기준
 2) 일반우대금리 기준

19. 준법감시인제도

가. 준법감시인 제도 개요

준법감시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나. 준법감시인 업무 현황

-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입안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사 등 총괄
- 준법감시업무의 기획·통할
- 준법감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준법감시 관련한 경영진, 관련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법규준수, 행정지도 등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 실시
-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검토
- 임직원 윤리강령의 준수여부 감독
- 금융소비자보호업무 총괄
- 자금세탁방지업무 전반

20. 내부통제현황

내부통제라 함은 은행의 자산보호, 회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은행자원의 효율적 이용, 은행의 각종 계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합니다.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이중관리, 상호대사 등 내부건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의 독립적 점검을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 내부통제위원회 외에 별도의 내부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 감사의 기능 및 역할

내부감사는 당행 내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독, 평가, 자문을 제공하며 체계화, 규범화된 방법을 통해 서울지점의 경영활동,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효과를 개선하고 지점의 발전전략과 경영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내부감사체계는 본점 감사위원회, 본점 내부감사국, 지점 내부감사로 구성되며, 본점 내부감사국은 업무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직접보고 하고, 지점 감사부의 감사업무를 지도, 관리 하고 있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지점 감사부는 서울지점, 부산, 대림, 건대지점등 한국내 영업점내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의 계획수립, 감사의 수행, 감사후 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 방침

- (1) 감사부서는 금융사고발생 예방,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업무처리관행 확립, 부실 자산 발생 사전방지 등을 중점으로 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개별 상품 또는 부서의 위험도를 사전에 측정하여 그 위험도에 따라 감사주기 및 시간을 정한 연간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현황을 검사합니다.
 - 1) 정기감사
연간 내부감사계획에 따라 서울 및 부산, 대림, 건대지점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
 - 2) 명령휴가시 이임감사
지점의 명령휴가제도 실시에 따른 이임감사
 - 3) 특별감사
금융사고, 민원 등에 대한 대표, 본점 또는 감독당국의 검사요구에 따른 특별감사
- (3)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부감사보고서를 통해 본점에 보고하고 경영진에 통보하며, 정기적으로 미비점 개선현황을 점검하여 지점 내부통제기능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1. 금융사고 발생현황

해 당 사 항 없 음

22.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위반 사실

위반 구분	발생월	비율	향후준수계획	약정서체결내용	이행여부	비고
		해 당 사 항 없 음				

23.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사항

해 당 사 항 없 음

26. 수시공시사항

-2024. 3. 4. 본점 은행장 변경

27. 리스크관리

가. 리스크관리 목적

지점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시장위험(Market Risk) 등이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지점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본의 적정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리스크관리 조직의 구조와 기능

1)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대표, 위험관리책임자(CRO), 부대표 및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크 관리의 정책과 절차의 수립 및 운영, 중대한 리스크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담당합니다.

2) 신대심사위원회 (여신심의위원회)

신대심사위원회는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기구로서, 여신 의사결정 및 여신정책결정을 담당합니다. 여신 의사결정에는 여신의 가부 및 한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여신정책결정에는 여신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3) 자산부채관리위원회

자산부채관리위원회는 장단기 자산과 부채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대표, 부대표 및 관련 부서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시경제의 상황 분석, 금융시장의 변화, 환율 및 funding 상황의 변화, 자금시장 상황과 유동성을 고려한 주요 경영 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합니다.

4) 경영관리위원회

경영관리위원회는 은행의 건전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표, 부대표 및 관련 부서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점 경영상황 및 현안을 논의합니다.

5) 자금세탁방지위원회

자금세탁방지위원회는 내부통제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절차의 수립 및 운영, 중요 자금세탁리스크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담당합니다.

다. 리스크관리 관련 시스템

GCMS를 이용하여 여신업무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며, GMRM시스템을 통해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를 측정하고, FMBM으로 일중 포지션관리, GMRM으로 통화별 포지션 관리를 합니다. GPC시스템을 통해 금융시장상품에 대한 통제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며, 본점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합니다.

24. 민원건수 및 민원발생 평가등급

가. 민원건수

구분	민원건수			환산건수(고객/회원십만명당 건)			비고
	당분기	증감률	직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직전분기	
자체 민원	0	0	0	0	0	0	
대외민원	0	0.00%	0	0	0	0	
합계	0	0.00%	0	0	0	0	

주1) 서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

주2)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을 통해 접수된 민원

나. 유형별 민원건수

구분	민원건수			환산건수(고객/회원십만명당 건)			비고
	당분기	증감률(%)	직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직전분기	
유 형	수신	0	0.00%	0	0	0	
	여신	0	0	0	0	0	
	신용카드 주1)	0	0	0	0	0	
	외환업무	0	0	0	0	0	
	기타 주2)	0	0	0	0	0	
합계	0	0.00%	0	0	0		

주1) 신용카드 경영은행인 경우 비교에 해당사항을 표시

주2) 전자금융, 펀드, 방카슈랑스 등 복합상품 판매 관련 홈페이지 오류, 직원응대등

다. 주요금융상품별 민원건수

구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고객 십만명당 건)			비고
	당분기	증감률 (%)	직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	직전분기	
수 신	정기에·적금	0	0.00%	0	0	0	
	그 외 수신	0	0	0	0	0	
여 신	주택담보대출	0	0	0	0	0	
	신용대출	0	0	0	0	0	
	그 외 여신	0	0	0	0	0	
신용카드 주1)	0	0	0	0	0	신용 카드 업무 경영	
방카슈랑스	0	0	0	0	0		
펀드	0	0	0	0	0		
기 타	0	0	0	0	0	해외 당발 송금	
합 계	0	0.00%	0	0	0		

주1) 체크카드 포함, 신용카드 경영은행인 경우 비교에 해당사항을 표시

25.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28. 상품이용시 유의사항

가. 예금

- * 은행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 * 예금상품 가입시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해당 예금상품의 개별약관을 반드시 열람하시고 공급하신 사항은 직원에게 문의 하십시오
- * 예금상품 가입시에는 해당 상품의 상품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예금상품 가입시에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금리를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 통장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하지 마시고,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금거래는 인감 이의 서명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서명을 사용하실 때에는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창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통장과 인감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 예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실 경우에는 직원이 통장, 의뢰서,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창구를 떠나지 마시고 통장이나 영수증등으로 거래금액, 예금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통장, 인감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영업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화기에서 현금카드로 현금을 찾으실 경우에는 금액과 명세표를 상호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환

- * 외국통화의 입출금 시 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외화예금의 이자는 연간일수를 360일로 계산합니다.
-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는 환전 및 송금시 여권번호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 *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및 수령(이하 지급 등)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지급등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자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시행령, 외국환 거래규정 및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합니다. (예: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다. 카드

- * 카드는 본인만이 사용하셔야 하며 타인(가족 포함)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마십시오.
- * 카드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 * 카드결제 시 승인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 *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정사용예방 안내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 *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의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예금, 급전대자, 부동산취득 등 자본거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현금인출 사용도 불가능함)

라. 여신

- * 은행거래는 반드시 실명에 의해야 합니다.
- *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취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 대출거래 약정 체결시에는 대출과목, 대출개시일,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적용방법, 연체금리 적용방법, 상환방법, 거치기간, 조기상환수수료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약정서에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
- * 대출의 이용은 본인의 수입 등으로 무리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변동금리형 대출은 대출기간 중에도 기준금리 변경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출신청시에는 당행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 제출시에는 신용불량자료 등록될 수 있습니다.
- * 대출을 받은 후 만기일 이내라도 신용상태 악화, 이자미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 만기 전 채무변제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매매의사를 은행에 알리고 담보의 교체 또는 관련 대출금의 명의인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하여야 합니다.
- * 담보부 여신의 이용시에는 담보가력이 하락하면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 대출거래 약정체결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등을 열람/교부받아 대출 조건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 근저당설계계약서나 근보증서상의 차주, 금액(채권최고액, 보증한도), 근저당권설정(보증)기간, 대출과목과 금액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공란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마. 전자금융

- * 전자금융서비스 거래에 사용되는 각종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연속숫자/문자, 동일숫자/문자, 전화번호 등)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전자금융거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기타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되 이전에 사용한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마시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 또는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금융거래를 타인에게 위탁하여서는 안됩니다.
-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수첩, 지갑, PC, 스마트폰 등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를 절대 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 * 은행에서 거래 안전을 위해 발급하는 보안매체(OTP)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전자금융서비스 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 이용자는 비정상적인 거래의 발생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계좌잔고 또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여 접속을 종료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되었음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아웃을 하지 않을 경우 타인에게 고객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 사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마시고, 첨부파일은 열람 또는 저장하기 전에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 *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최신 보안패치가 적용된 OS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시 임의로 설치를 중단하거나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의 실행을 중지시키면 안됩니다.
- * 은행 사이트를 가정하여 접속유도를 통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각종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은행 위장 사이트(피싱/파밍사이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9. 수수료

◇ 송금						
구분	항목		수수료율/금액		비고	
해외	당발송금	송금수수료	송금금액의 0.1%	최저 8,000원 ~ 최고 20,000원		
		전신료		7,000원		
		조건변경수수료		10,000원		
		외화현찰 수수료	USD	1.50%		외화현찰 송금시
		CNY	1.00%			
		퇴결수수료		없음		
	위안화 무역(용역) 결제	당발송금수수료		송금금액의 0.1%	최저 30위안 ~ 최고 120위안	
		전신료		60위안		
		조건변경수수료		60위안		
		외화현찰수수료		1.00%		
	타발송금	위안화표시		100위안		기타통화 수취시 없음
		원화표시	5백만원 미만	10,000원/건		
		5백만원 이상	20,000원/건			
퇴결수수료			미화20불			
국내	외화이체	당발수수료	미화 5천불 미만	미화5불/건		
			미화 5천불 이상~ 미화 2만불 이하	미화10불/건		
			미화 2만불 초과 3만 위안 미만	미화15불/건		
			3만 위안 이상 ~ 12만위안 이하	30위안/건		
		12만위안 초과	60위안/건			
		90위안/건				
		기타통화	달러 수수료에 준하여 징구			
		외화현찰 수수료	USD	1.50%		외화현찰 송금시
		CNY	1.00%			
	타발수수료		없음			
	퇴결수수료		미화20불			
	원화이체	송금수수료	10만원 이하	500원/건		
1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1,500원/건	가상계좌 또는 타행한 공동망을 통한 카운터 원화이체		
	100만원 초과	2,500원/건				
◇ 예금						
구분	항목		수수료율		비고	
	외화현찰수수료	USD	1.50%			
		CNY	1.00%			
		기타통화	달러 수수료에 준하여 징구			
◇ 대출						
구분	항목		수수료율		비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 1.2%	개인예금담보대출 및 사전에 별도 오를로 약정된 건은 제외		
◇ 기타 제수수료						
구분	항목		금액		비고	
	통장(중서) 재발행수수료		2,000원/건			
	잔액(잔고)증명서 발급수수료		2,000원/건		동일건 추가발급시 1천원	
	거래내역서 발급수수료		없음			
	은행조회서 발급수수료		50,000원/건		회계법인을 통한 조회 시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2,000원/건		동일건 추가발급시 1천원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수수료		2,000원/건		동일건 추가발급시 1천원	
	장기저당차입금 이상상환증명서 발급수수료		없음			
◇ 개인인터넷뱅킹서비스 수수료						
구분	항목		수수료율/금액		비고	
해외	위안화 바로지급 송금/ 타행 송금	송금수수료	KRW	송금금액 의 0.09%	최저 7,200원 ~ 최고 최저 미화7.2불 ~ 최고 미화18불	
			USD			
		전신료	KRW	7,000원		
			USD	미화8불		
	공상은행 빠른송금	송금수수료	KRW	송금금액 의 0.08%	최저 6,400원 ~ 최고 최저 미화6불 ~ 최고 미화16불	
			USD			
	전신료		없음			
국내	당행이체 원화이체	송금수수료	무료 건당 500원			
구분	항목		수수료율/금액		비고	
OTP	발급		5,000원/개			
	재발급		5,000원/개			
	공인인증서 발급		무료			

◇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 수수료					
구분	항목	수수료율/금액		비고	
해외	타행송금 송금수수료	KRW	송금액의 0.1%	최저 8,000원 ~ 최고 최저 200위안 ~ 최고 1,000위안	출금계좌 통화에 따라 수수료 통화가 결정
		CNY		최저 미화8불 ~ 최고 미화20불	
		USD			
	전신료	KRW	7,000원		
		USD	미화8불		
		CNY	60위안		
공상은행 빠른송금 송금수수료	KRW	송금액의 0.1%	최저 8,000원 ~ 최고 20,000원		
		CNY	최저 200위안 ~ 최고 1,000위안		
		USD	송금액의 0.08% 최저 미화6불 ~ 최고 미화16불		
	전신료	없음			
국내	외화이체 당발수수료	5백만원 미만	5,000원/건	출금계좌 통화에 따라 수수료 통화가 결정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10,000원/건		
		2천만원 초과	15,000원/건		
		미화5천불 미만	미화5불/건		
		미화5천불 미화2만불 이하	미화10불/건		
		미화2만불 초과	미화15불/건		
		3만원 미만	30위안/건		
		3만원 이상~ 12만원 이하	60위안/건		
		12만원 초과	90위안/건		
		당월이체 원화이체 송금수수료	무료		
	500원/건				
구분	항목	수수료율/금액		비고	
OTP	발급	5,000원/개			
	재발급	5,000원/개			
	공인인증서 발급	4,400원/년		부가세 포함	

* 무역 금융 관련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1. 신용장 통지	
1.1 신용장 통지	
사전신용장	15,000원
원신용장	30,000원
조건변경서	25,000원
신용장 증계	15,000원
조건변경서 증계	5,000원
분실재발행	70,000원
신용장취소	25,000원
1.2 신용장 양도	
양도수수료	30,000원(전신료포함)
서류교체조건	건당 100불
1.3 신용장 확인	
원신용장 확인	개설은행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최저70,000원
조건변경서 확인	
a. 증액	개설은행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최저70,000원
b. 유효기일연장	개설은행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최저70,000원
c. 기타	20,000원
2. 수출신용장 매입	
2.1 일람불신용장 환어음매입	
환가료	
a. 직매입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b. 재매입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환가료 징수기간	10일
취급수수료	건당 100불
특사송달료	20,000원
2.2 기한부신용장 환어음매입	
할인료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취급수수료	건당 100불
특사송달료	20,000원
2.3 신용장부 추심	
취급수수료	건당 100불
추심료	20,000원
특사송달료	20,000원
3. 수입신용장	
3.1 수입신용장 개설	
개설수수료	연 0.6%
조건변경 수수료	
a. 증액	연 0.6%
b. 유효기일연장	연 0.6%
c. 기타	20,000원
전신료	20,000원
인수수수료	연 2.0%, 최저 50불
내국수입유선스 이자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결제수수료	건당 80불
하자수수료	건당 50불
3.2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행수수료	20,000원
보증료	연 3.0%, 최저 20,000원
4. 환환어음 추심	
4.1 타발추심	연 0.10%, 최저 20,000원~ 최고50,000원
취급수수료	건당 100불
4.2 당발추심	연 0.10%, 최저 20,000원~ 최고50,000원
취급수수료	건당 100불
5. 수출채권매입	
할인료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6. SECONDHAND FORFAITING, REFINANCE, FUNDED R/P	
이율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취급수수료	연 0.00%-0.3%
7. 기타	
우편료	2,000원
특사송달료	20,000원
기타업무 전신료	10,000원
조기상환 취급수수료	건당 100불

30. 주요용어해설

1. 이용자편람은 공시내용 중 일반인에게 생소한 금융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금융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주요용어를 모두 공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3. 주요용어의 종류 및 해설은 아래와 같다.

- 총당금적립전이익

총당금적립전이익은 총수익에서 제경비 등을 차감한 이익으로서 은행의 영업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 총당금적립전이익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제총당금환입액 + 제총당금전입액(대손상각비, 지급보증총당금전입액, 퇴직급여, 기타총당금 전입액, 대손보전기금)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실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으로 표시합니다.

-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은 은행의 총여신 중 연체여신, 이자미계상여신(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악화여신, 채권재조정여신)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 총여신 : 대출금(원화, 외화, 역외외화, 신탁계정 대출금 포함)+내국수입유선스+지급보증대지급금+확정지급보증+신용카드채권+적불카드채권+여신성가지급금+매입외환(내국신용장어음매입 및 관련 미수금 포함)+사모사채+기업어음+종합금융계정의대출채권+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 고정이하분류여신

고정이하분류여신은 은행의 총여신 중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상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여신으로 고정, 회수 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 (1) 고 정 : 총여신 중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액
- (2) 회수 의문 : 총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거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3) 추정손실 : 총여신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은행의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파생상품거래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근거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및 기타 이를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 1) 장내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파생상품거래입니다.
- 2) 장외거래는 장내거래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입니다.
- 3) 헤지거래는 기초자산의 손실을 감소 혹은 제거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입니다.
- 4) 트레이딩거래는 거래목적이 헤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거래입니다.
- 5) 잠재적신용익스포저는 리스크요인별, 잔존만기별로 신용환산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비율로 BIS 금융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산의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외은지점의 경우 운영리스크 제외)에 따라 자기자본보유를 의무화하는 "자기자본 측정과 적정자기자본 수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 지도비율의 하나로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재무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지도비율은 8% 이상입니다.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은행이 유동성 위기상황에서도 1개월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단기 유동성비율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지도비율은 100% 이상(외국은행 국내지점은 60% 이상)입니다.

- 업무용유형자산 비율

업무용유형자산 비율은 은행이 점포개설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 투자액, 임차보증금 등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기자본에 대한 동 투자액의 비율로 표시됩니다.

- 예대금리차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자금부문의익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원화대출금 수익률에서 원화예수금비용률을 차감하여 표시되며, 대출운용의 적정수익력 및 저비용성자금(Low Cost Funding)조달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명목순이자마진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이자수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과의 차이를 말하며 매결산기말에 금융감독원앞 보고하는 "업무보고서" 상의 순이자마진 산출방식에 의거 산출하여 기재한다.

◦ 명목순이자마진(N.I.M.)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이자수익자산

- 순외환익스포저

순외환익스포저는 외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투기 등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설정된 외국환 은행의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순외환익스포저의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 대비 50% 이내입니다.

- 지급보증

은행이 거래자의 의뢰에 따라 동 거래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확정지급보증 : 용자담보지급보증, 사채발행지급보증, 화물선취보증서가 발급된 수입관계지급보증, 해외현지차입 및 입찰 보증, 계약이행 보증과 같이 은행이 행한 보증 행위중 일정한 이행조건이 구비된 지급보증을 확정지급보증이라고 합니다.

(2) 미확정지급보증 : 화물선취 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수입관계 지급보증 등과 같이 은행이 행한 보증행위 중 이행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지급보증으로 이 지급보증은 이행요건이 구비되는 시점에서 확정지급보증으로 전환되거나 보증 의뢰인의 주채무 이행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 대손준비금

은행은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하고 있으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신용등급

신용등급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것이며, Moody's, S&P, Fitch 를 국제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은 기간에 따라 장/단기, 통화에 따라 자국통화표시/외화표시, 종류에 따라 채권(부채)/예치/발행 관련 신용등급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장/단기에서 단기등급은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채무 상환능력 및 상환불능위험을 나타내며, 국내은행의 경우 개별은행의 사정에 따라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평가사가 1 ~ 2개에 한정될 수도 있으나, 3대 신용평가사는 국내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대부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신용리스크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 운영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 시장리스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로서 "일반시장리스크"와 "개별리스크"로 구분됩니다. "일반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 추가, 환율, 일반상품의 시가 등 시장가격의 일반적 수준 변화에 따른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합니다. "개별리스크"라 함은 일반적인 시장가격의 변화외에 채권 및 주식발행자 등의 신용리스크의 변동 등에 의한 금융기관 대상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말합니다.

- 금리리스크

금리가 금융기관의 금리민감 자산.부채 등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손실 위험으로서 금리 EaR (Earning at Risk)과 금리 VaR (Value at Risk) 등으로